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핵심성장 자산배분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8. 생략 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~ 라. 생략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8. 좌동 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~ 라. 좌동 (신설) 마. KB 그로스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
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상으로 하며 개별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 가. 제2조 제9호 가 목 및 나 목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미만으로 한다. 2. ~ 3. 생략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상으로 하며 개별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 가. 제2조 제9호 가 목, 나 목 및 마 목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미만으로 한다. <u>이 때, 제2조 제9호 마 목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미만으로 한다.</u> 2. ~ 3. 좌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그로스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<u>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1. <u>최초 회계기간부터 23번째 회계기간까지: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</u> 2. <u>24번째 회계기간: 2025년 11월 04일부터 2026년 09월 26일까지</u> 3. <u>25번째 회계기간부터: 2026년 09월 27일부터 매 1년간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사과나무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<u>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1. 최초 회계기간부터 22번째 회계기간까지: <u>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</u> 2. 23번째 회계기간: 2026년 05월 23일부터 2026년 09월 26일까지 3. 24번째 회계기간부터: 2026년 09월 27일부터 <u>매 1년간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성장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<u>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1. 최초 회계기간부터 15번째 회계기간까지: <u>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</u> 2. 16번째 회계기간: 2026년 07월 13일부터 2026년 09월 26일까지 3. 17번째 회계기간부터: 2026년 09월 27일부터 <u>매 1년간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그린 성장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<u>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1. 최초 회계기간부터 13번째 회계기간까지: <u>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</u> 2. 14번째 회계기간: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6년 09월 26일까지 3. 15번째 회계기간부터: 2026년 09월 27일부터 <u>매 1년간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그로스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<u>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1. 최초 회계기간부터 23번째 회계기간까지: <u>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</u> 2. 24번째 회계기간: 2026년 01월 03일부터 2026년 09월 26일까지 3. 25번째 회계기간부터: 2026년 09월 27일부터 <u>매 1년간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업종대표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8. 생략 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KB 그로스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나. KB 업종대표주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8. 좌동 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KB 그로스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나. <u>삭제</u>
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<u>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1. 최초 회계기간부터 22번째 회계기간까지: <u>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</u> 2. 23번째 회계기간: 2026년 01월 02일부터 2026년 09월 26일까지 3. 24번째 회계기간부터: 2026년 09월 27일부터 <u>매 1년간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RISE 글로벌 AI밸류체인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KB RISE 글로벌 AI밸류체인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KB 글로벌 AI밸류체인 ETF 모아드림 EMP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

	“KB RISE 글로벌 AI 밸류체인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”으로 한다. ②~③생략	“KB 글로벌 AI밸류체인 ETF 모아드림 EMP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”으로 한다. ②~③좌동
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13. 생략 14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 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13. 좌동 <u>14. 삭제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RISE 미국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KB RISE 미국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KB 미국 핵심 ETF 모아드림 EMP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KB RISE 미국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”으로 한다. ②~③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KB 미국 핵심 ETF 모아드림 EMP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”으로 한다. ②~③좌동
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13. 생략 14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 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13. 좌동 <u>14. 삭제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RISE 미국 고배당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KB RISE 미국 고배당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KB 미국 고배당 ETF 모아드림 EMP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KB RISE 미국 고배당 ETF 모아드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”으로 한다.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KB 미국 고배당 ETF 모아드림 EMP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”으로 한다.

	신탁(주식-재간접형)”으로 한다. ②~③생략	신탁(주식-재간접형)”으로 한다. ②~③좌동
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12. 생략 13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 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12. 좌동 <u>13. 삭제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2. 변경(예정)일: 2026년 09월 18일(금)